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3. 6.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호
----------	-----

제출연월일 : 2018. 3.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그동안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지원범위(안 제1조~제2조)
-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안 제3조~제4조)
- 다. 결산서 제출(안 제5조)
- 라.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없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민법」 제32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8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특이사항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8. 1. 31. ~ 2. 20.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전 략 기 획 실 장	한 성 환
	시 정 기 획 팀 장	허 원
	담 당 자	신 상 욱 (746-5022)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단 재정 지원

나. 추계결과 : 8,250,000원

◎ 재단 출연금 <2018년도>

- 8,250,000원 × 1회 = 8,250,000원

3. 작성자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8,250	8,250	8,250	8,250	8,250	41,250
국 비						0
기 금						0
도 비						0
시 비	8,250	8,250	8,250	8,250	8,250	41,250
세 출	8,250	8,250	8,250	8,250	8,250	41,250
◎ 출연금	8,250	8,250	8,250	8,250	8,250	41,250
재원 조달	8,250	8,250	8,250	8,250	8,250	41,2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250	8,250	8,250	8,250	41,250
	지방세	8,250	8,250	8,250	8,250	41,25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참고 2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 조례제정 : 71개 (완료 57, 입법예고 14)

(‘18. 1. 24.현재)

지자체	구분	지자체	비고
합계		71개 기관	
대구(1)	조례제정(1)	달성군	
경기(5)	조례제정(4)	광명시,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입법예고(1)	평택시	
강원(6)	조례제정(5)	강릉시,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입법예고(1)	홍천군	
충북(4)	조례제정(4)	영동군, 진천군, 충주시, 청주시,	
충남(12)	조례제정(9)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입법예고(3)	충청남도, 계룡시, 금산군,	
전북(6)	조례제정(4)	장수군, 김제시, 순창군, 익산시	
	입법예고(2)	군산시, 부안군	
전남(17)	조례제정(14)	순천시,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나주시, 함평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화순군	
	입법예고(3)	목포시, 장성군, 광양시,	
경북(9)	조례제정(8)	의성군, 영양군, 칠곡군, 울진군,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김천시	
	입법예고(1)	경주시	
경남(11)	조례제정(8)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거제시, 고성군, 함안군, 하동군	
	입법예고(3)	남해군, 김해시, 통영시	